「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」 고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본수수료를 상향하고 통상우편물 감소 등 우편 사업환경 변화와 우편 서비스별 원가보상률을 반영하여 업무수수료 대상 업무 재분류 및 지급구간·수수료율 조정 등 지급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기본수수료 상향 : 현행 625,000원 → 개편 756,000원

나. 업무수수료

1) 대상 업무 재분류

현 행		개 편(안)
일반우편물(국내일반통상, 기타 부가수수료)	➔	① 국내일반통상(국내일반통상, 기타 부가수수료) * '전자우편' 지급체계 별도 신설
국내등기통상 국내준등기통상	➔	② 국내특수통상
일반우편물(국내보통소포) 국내 등기소포	➔	③ 국내소포
일반우편물(국제통상·소포) 국제특급	➔	④ 국제우편물
우표류	➔	⑤ 우표류

2) 지급구간·수수료율 조정

대상 업무	주요 내용
① 국내일반통상	● 현행 유지 (체감제, 1구간 18% → 4구간 0.5%) ● '전자우편' 지급체계 별도 신설 (체감제, 1구간 18% → 4구간 0.5%)
② 국내특수통상	● 최저 접수물량 지급구간/수수료율 신설(1,200통, 53%) ● 최대 접수물량 지급구간/수수료율 조정 (18,000통→12,000통/2%→1%)
③ 국내소포	● 현행 유지(정률제, 16%)
④ 국제우편물	● 수수료율 조정 (정률제, 15→16%) * 단, EMS 계약요금제·K-Packet은 현행 유지 (정률제, 5%)
⑤ 우표류	● 현행 유지

3. 발령 요청자 : 기반시설기획담당관

<신·구문 대조표>

KOREA POST
별정국·취급국담당/김민정/2023-04-10

현 행

1. 우편창구업무

대 상 업 무 (유료우편물에 한함)	위탁 수수료
1. 기본수수료	매월 625,000원
2. 국내등기통상우편물	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
가. 월 접수 1통부터 1,8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
나. 월 접수 1,801통부터 6,0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
다. 월 접수 6,001통부터 9,0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
라. 월 접수 9,001통부터 18,0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 상당액
마. 월 접수 18,001통 이상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.5 상당액
2-1. 국내준등기통상우편물	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
가. 월 접수 1통부터 1,800통까지	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
나. 월 접수 1,801통부터 6,000통까지	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
다. 월 접수 6,001통부터 9,000통까지	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
라. 월 접수 9,001통부터 18,000통까지	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 상당액
마. 월 접수 18,001통 이상	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.5 상당액
3. 국내등기소포우편물	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- 우체국쇼핑 소포요금 포함
4. 국제특급(EMS)우편물	
가. 창구접수	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
나. 계약요금제(K-packet 포함)	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
5. 우표류	
가. 월 접수 50만원까지	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
나. 월 접수 50만원 초과분부터 100만원까지	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
다. 월 접수 100만원 초과분부터 1,000만원까지	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
라. 월 접수 1,000만원 초과분부터	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
6. 일반우편물 등	해당국 수납금액 중 위 2.~5. 제외 (국내/국제우편, 부가수수료 포함)
가. 월 접수 300만원까지	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
나. 월 접수 300만원 초과분부터 1,000만원까지	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
다. 월 접수 1,000만원 초과분부터 3,000만원까지	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
라. 월 접수 3,000만원 초과분부터	수납금액의 100분의 0.5 상당액

* 기본수수료 :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, 천재지변, 감염병 예방,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우정청장이 판단한 경우 전액 지급 가능

개 정 안

1. 우편창구업무

대 상 업 무 (유료우편물에 한함)	위탁 수수료
1) 기본수수료	매월 756,000원
2) 국내특수통상우편물	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
가. 월 접수 1통부터 1,2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3 상당액
나. 월 접수 1,201통부터 1,8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
다. 월 접수 1,801통부터 6,0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
라. 월 접수 6,001통부터 9,0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
마. 월 접수 9,001통부터 12,000통까지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 상당액
바. 월 접수 12,001통 이상	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.5 상당액
3) 국내소포우편물	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- 우체국쇼핑 소포요금 포함
4) 국제우편물	
가. 창구접수	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
나. 계약요금제(K-packet 포함)	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
5) 국내일반통상우편물 등	해당국 수납금액 중 위 2.~4., 6. 제외 (부가수수료 포함)
가. 월 접수 300만 원까지	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
나. 월 접수 300만 원 초과분부터 1,000만 원까지	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
다. 월 접수 1,000만 원 초과분부터 3000만 원까지	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
라. 월 접수 3,000만 원 초과분부터	수납금액의 100분의 0.5 상당액
5-1) 전자우편	제작수수료 제외
가. 월 접수 5만 원까지	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
나. 월 접수 5만 원 초과분부터 30만 원까지	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
다. 월 접수 30만 원 초과분부터 1,500만 원까지	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
라. 월 접수 1,500만 원 초과분부터	수납금액의 100분의 0.5 상당액
6) 우표류	
가. 월 접수 50만 원까지	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
나. 월 접수 50만 원 초과분부터 100만 원까지	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
다. 월 접수 100만 원 초과분부터 1,000만 원까지	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
라. 월 접수 1,000만 원 초과분부터	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

* 기본수수료

① ―――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

별정국·취급국담당 / 김민정 / 2023-04-10

현 행	개 정 안
* 등기취급수수료 :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기준 * 수납금액 : (생략)	② 우편창구업무 2)~5)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* 등기취급수수료: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」 및 「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 기준 * 수납금액: 현행과 같음
2. ~ 3. (생략)	2. ~ 3. (현행과 같음)

KOREA POST 별정국·취급국담당/김민정/2023-04-10/